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의 發效에 따른 立法的 對應方案

丁相朝*

차례

- I. 머리말
- II. 市場接近 - 商品 및 서비스 交易의 自由化
- III. 投資의 自由化
- IV. 知的所有權의 保護
- V. 通商紛爭의 解決節次
- VI. GATT체제와의 관계
- VII. NAFTA협정의 교훈 및 향후전망

I. 머리말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개국은 1992년 12월에 北美自由貿易協定(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체결하고 지난해 연말에 의회비준을 받아서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으로써, 3개국의 관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법학박사

등의 수입제한은 원칙적으로 15년이내에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북미지역에 총인구 3억 6천만명 그리고 국민총생산액의 합계가 6조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自由貿易圈이 탄생하게 되었다. NAFTA협정의 발효로 인하여 북미 3개국간의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산업 및 고용구조가 조정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의 무역 및 투자의 흐름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나 북미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은 경쟁상의 지위 또는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NAFTA협정의 발효에 대해서 기업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특히 입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NAFTA협정의 체결이 유럽연합(EU)의 單一市場의 완성에 자극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임을 부인할 수 없고,¹⁾ 20세기말 국제경제를 특징지워주는 소위 경제블록화의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인 바, 경제블록화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또는 활성화에 관한 검토와 분석을 하고 더우기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가장 많은 美國²⁾과의 통상마찰 해소방안 및 교역증대의 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
- 1)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바, 유럽연합은 본래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이후 직면한 폐허와 좌절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유럽지역에서의 극단적 국가주의를 억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등장하게 된 유럽공동체조약(Treaty of Rome)이 모체가 된 것이다. 따라서, NAFTA협정은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제블록임에 반하여, 유럽연합은 애초부터 극단적 국가주의를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속에 공존공영하는 단위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이념적 출발점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당연한 결과로서 NAFTA협정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협정에 불과하지만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의 입법·사법·행정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고 유럽의 Council, Commission, Court of Justice, Parliament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여 상당한 주권제한을 전제로 한 새로운 기구창설이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Frederick M. Abbott, "Integration Without Institutions: The NAFTA Mutation of the EC Model and the Future of the GATT Regime", 40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917 (1992).
- 2) 우리나라의 對美輸出은 1993년말 현재 전체 수출의 23.6%에 해당된다.

NAFTA협정은 NAFTA체약국들의 만장일치로 제3국의 추가적 가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³⁾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NAFTA협정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별도의 雙方自由貿易協定을 체결할 수도 있고 또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해 말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오는 4월에 서명되어서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이 마련되었는 바, NAFTA협정과 UR협정이 어떠한 상호관계에 있는가⁴⁾하는 점도 면밀히 검토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II. 市場接近 - 商品 및 서비스 交易의 自由化

NAFTA협정은 市場接近(Market Access)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체약국간의 商品 및 서비스 交易의 自由化를 꾀하고 있다. 모든 상품을 4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과반수 이상의 품목에 대한 關稅는 즉시 철폐하도록 하고 자동차 등의 상품에 대하여 5년이내 관세의 점진적 철폐 또는 10년이내의 철폐를 규정하고 있고, 채소 및 과일 등의 농산품에 대하여는 15년이내 관세의 점진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의 관세율인하는 1989년에 이미 발효된 쌍방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서 시행되고, 3개국의 추후협의에 따라서 관세철폐일정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관세장벽이외에도 수입수량제한, 수입금지, 수입허가제, 수입과정금, 보건위생규정 등의 각종 非關稅障壁이 시장접근의 장애요소로 등장한다. 따라서, NAFTA협정은 원칙적으로 비관세장벽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농산물, 자동차, 에너지 및 섬유류 등에 있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정한 경과기간에 한해서 특

3)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NAFTA自由貿易委員會(Free Trade Commission)와의 협상에 따라서 가입의 조건을 정하여 가입한다(NAFTA협정 제2205조).

4) Peter McKellar, "NAFTA and the GATT: A Regional Perspective on the Uruguay Round", 18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7 (1992).

정 비관세장벽의 존속을 허용하고 있다.⁵⁾

石油에 관해서는 멕시코 정부가 석유를 국가주권의 상징으로 보는 전통적인 입장을 철저히 수호하려고 하여서, 결과적으로 NAFTA협정에서도 멕시코의 국립석유회사 Pemex의 석유 탐사, 개발, 판매 등에 관한 독점을 완화할 수 없었다. 다만, Pemex의 조달계약에 있어서 10년이내에 완전히 미국과 캐나다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전기 등의 기타 에너지 공급은 국경을 초월한 공급사업이 허용되었다. 석탄의 교역도 자유화되었고, 석탄을 채굴하는 사업도 자유화되어 미국과 캐나다의 탄광과 관련 시설의 소유가 자유롭게 허용되었다.⁶⁾

自動車交易에 있어서도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자유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의 3대 자동차회사 General Motors, Ford, Chrysler는 이미 멕시코에 현지공장을 가지고 많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큰 관심사는 韓國 등의 역외국이 멕시코에 조립공장을 설립하여 NAFTA협정체약국의 관세면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NAFTA협정에 상세하고 엄격한 내용의 原產地 규정을 두고 있다. 본래 GATT의 最惠國待遇(MFN)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수출되어 오는 재화인가에 관계없이 무역장벽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이제까지도 여러가지 예외사유를 원용하면서 국제교역의 25%이상의 거래에서 최혜국대우가 배제되어 왔고,⁷⁾ NAFTA협정은 자유무역협정으로서의 예외를 주장하면서 효율적으로 최혜국대우의 배제를 위한 상세하고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NAFTA협정의 원산지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경과기간의 경과 후에 승용차와 경트럭(light trucks)의 경우에는 62.5%이상의 체약국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기타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60% 이상의 체약국 부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멕시코 등의 체약국에서 이미 생산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우선 50%로부터 시작하여 4년후에는 56%로 상

5) Gary Clyde Hufbauer and Jeffrey J. Schott, *NAFTA: An assessment*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3), p.33.

6) NAFTA협정 제601조 내지 제609조 및 Annex 602.3 참조.

7) John H.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 (Cambridge, the MIT Press, 1990), p.142.

승하고 8년후에는 62.5%로 상향요구되는 데 반하여, 새로이 공장을 개설하게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동안 50%의 원산지규정만이 적용되고 그후에 62.5%규칙에 따라야 한다.⁸⁾

서비스교역에 있어서도 자유화를 위한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金融서비스의 자유화에 있어서, 각 체약국들은 자국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체약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하고 공평한 경쟁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투자자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자국내에서 설립, 인수, 영업확장, 경영, 관리, 운영, 판매 및 투자자산의 양도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약국의 금융기관은 다른 체약국에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은행, 보험, 증권 및 기타의 금융서비스업무를 취급할 수 있고, 이러한 금융기관의 설립에 있어서 각 체약국은 특정 체약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여타 체약국에 금융기관을 설립할 경우에는 자신이 결정한 법적 형식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체약국의 금융기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체약국의 금융기관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자동차교역에서의 원산지규정을 원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미국과 캐나다는 당해 금융기관이 어느 나라에서 설립되었는가(물론 당해 국가에서 상당한 영업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함)를 기준으로 하는데 반하여, 캐나다는 당해 금융기관의 50%이상의 지분이 체약국 국민에 의하여 소유되어 지배되고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⁹⁾

III. 投資의 自由化

체약국간의 투자에 있어서도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투자의 자유화를 도모하고 있다. NAFTA협정은 특히 체약국의 영토내의 모든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이행을 부과하거나 강요할

8) NAFTA협정 제403조 및 Annex 403.2와 Annex 403.4 참조.

9) NAFTA협정 제1401조 내지 제1412조 참조.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그러한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

- 輸出履行義務: 일정수준 이상의 재화와 용역의 수출의무
- 國產部品使用義務: 일정수준의 국내부품 사용의 충족을 요구하는 행위
- 國產品 使用義務: 자국에서 제조된 재화와 용역의 사용 및 이를 우대하는 조치
- 貿易收支의 균형을 위한 투자제한 조치: 수입량(액)을 수출량(액) 또는 투자관련 외환유입과 연계시킴으로써 투자결과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
- 技術移轉義務: 투자의 조건으로 특허기술이나 기타의 제조공정 또는 노우하우의 이전을 의무화하는 조치

투자의 자유화에 대하여는 각 체약국의 특수한 사정을 전제로 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原子力 產業은 내국인에 한해서만 허가되는 예외가 유보되어 있고, 採礦 산업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참가만이 캐나다와 멕시코기업에 허용되는 예외가 유보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멕시코의 투자에 대해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캐나다투자법에 따른 사전심사를 여전히 받게 되는 예외가 유보되어 있고, 특히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캐나다의 문화유산과 민족 주체성과 관련된 분야는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심사의 대상으로 된다는 예외가 인정되어 있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대상을 2,500만 달러이상의 투자로부터 10년후에는 단계적으로 1억 5천만달러이상의 투자로 상향조정 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부품산업은 협정발효 6년후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경과조치가 허용되고, 마킬라도라(Maquiladoras) 산업의 생산품은 협정발효일 당시 총생산액의 55%이내에서만 국내판매가 허용되지만 8년이내에 그러한 규제가 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10) NAFTA협정 제1006조.

IV. 知的所有權의 保護

새로운 이슈로서의 知的所有權에 관해서도 NAFTA협정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주요 특징은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지적소유권법의 보호수준을 상향조정하여 미국 지적소유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주로 멕시코의 지적소유권법의 개정 및 보호강화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멕시코의 지적소유권법의 개정을 위한 실체 법적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멕시코 등의 체약국이 최소한 가입해야 할 지적소유권 관련 국제조약을 열거함으로써 기존의 국제규범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입법기술도 엿볼 수 있다. 협정체약국이 가입해야 하거나 충실히 이행해야 할 지적소유권 관련 국제조약들은 아래와 같다:

- 1971년 음반 불법복제에 대한 음반제작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 1971년 문예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 1967년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 1978년 식물신品种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 협약)
- 1991년 식물신品种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 협약)

NAFTA협정은 일반적 의무로서 지적소유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적소유권의 보호가 합법적인 貿易障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적소유권의 행사에 의한 자의적인 市場分割이라거나 지적소유권의 행사에 의한 일종의 非關稅 貿易障壁의 구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¹¹⁾

NAFTA협정은 저작물의 보호에 관하여 특히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 베른협약에 규정된 저작물에 대하여 협정체약국들은 저작권법적 보호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베른협약의 해석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인식하여, NAFTA는 컴퓨터프로그램도 베른협약상의 저작물의 하나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을 명백히 규

11) NAFTA협정 제1701조제1항.

정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많 은 점을 고려해서 NAFTA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편집저작물이 知的 創作의 결과라면 모두 저작물의 하나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의 내용으로서는, 특히 무단복제된 저작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 는 권리와 일반공중에 대한 저작물의 전달의 권리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의 公衆貸與權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무단 복제된 저작물의 수입에 관한 규제와 대여업에 의한 저작자의 수입감소의 방지에 신중한 배려를 하 고 있는 흔적이 보인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대여에 관해서는, 프로그램 저작 권자가 프로그램을 일단 판매하여도 자신의 공중대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판매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즉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침 해에 해당될 수 있다.

NAFTA 협정의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위성신호에 관한 저 작권 및 著作隣接權에 관한 규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의 위성 방송이 급증함에 따라서 위성방송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 으로 보인다. 즉, 암호를 포함한 프로그램 전송 위성신호의 합법적인 배포 권자의 허락없이, 그러한 암호를 해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치를 제조, 수 입, 판매, 대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은 형사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암호를 포함한 프로그램 전송 위성신호를 합법적 배포권자의 허락없이 해독하여, 상업적 활동과 관련해서 그러한 위송신호를 수신하거나 또는 일반공중에게 배포하는 것, 또는 전술한 암호해독장치의 제조, 수입, 판매, 대여, 배포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2) 위성신호에 관한 합법적인 배포권자라고 함은 위성을 통하여 제공되는 방송저작물 등의 著作權者 및 著作隣接權者를 의미한다. 이러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없이 암호해독장치의 공급과 암호해독된 위성신호 의 상업적 수신이나 배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최근 위성과 케이블 을 통한 방송이 일반화됨에 따라서 방송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12) NAFTA 협정 제1707조.

NAFTA협정은 저작권이외에도 특허권, 상표권, 산업디자인 등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半導體集積回路配置設計의 보호 또는 營業秘密과 原產地表示의 보호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도 두고 있다. 또한 지적소유권의 執行確保와 최종적 규정들에서는, 지적소유권의 집행확보를 통하여 지적소유권의 침해에 따른 유효적절한 救濟手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규정들과 특히 民事·刑事·行政的 救濟節次를 효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지적소유권 관련 상품이 NAFTA체약국 사이의 국경을 넘어 교역되는 경우에 지적소유권 침해 상품이 소비자에게 도달되지 않도록 사전에 稅關節次에서 모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NAFTA협정의 세관절차에 의하면, 세관절차의 정지를 신청하는 지적소유권자 즉 申請人은 지적소유권 침해에 관한 일정의 증거(prima facie)를 제출하고 문제된 침해상품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관할당국은 被申請人的 이익을 보호하고 남용을 예방하기에 충분한 보증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稅關當局은 법원 등의 결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의장, 특허, 집적회로 또는 영업비밀을 포함한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정지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에 문제된 수출입 상품의 所有者나 輸入者 등은 그 지적소유권자에 대한 보상에 충분한 정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절차를 밟아서 유통시킬 수 있다. 그후 일정 기간동안 지적소유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자 등은 자신이 제공했던 담보를 반환받을 수 있다.

NAFTA협정 稅關節次에서 被申請人을 保護하기 위한 규정도 두고 있다. 즉, 申請인이 수입정지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후 근무일 기준으로 10일(10 working days)이 경과하도록 지적소유권 침해의 본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수입정지의 연장을 신청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당국이 수입정지를 해지하고 정상적인 세관통과절차를 밟는 것을 허용한다. 지적소유권 침해의 본안에 관한 심사절차에서, 被申請人은 수입정지가 적정한지 또는 수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괴신청인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에 의하여 수입정지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내에 사

건 本案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정지는 해소되는 것으로 한다. 수입정지처분을 신청한 申請人은, 부적법한 수입정지 또는 수입정지의 해지로 인하여 수입상품의 수입자 또는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補償해야 한다.¹³⁾

V. 通商紛爭의 解決節次

NAFTA협정의 통상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규정은 주로 캐나다-미국간 자유무역협정의 그것과 유사하다.¹⁴⁾ 기본적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의 각료급 대표로 구성되는 自由貿易委員會(이하에서는 “위원회”라고 약칭함)가 구성되어, 당해 위원회가 NAFTA협정에 관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고 나아가 그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특히 패널절차를 위한 모범규칙을 제정하고, 분쟁해결과정에서 분쟁당사국들을 위하여 주선·조정·중개를 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각국을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감독한다.

NAFTA분쟁해결절차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NAFTA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체약국간 분쟁의 예방 또는 해결에 적용되고 특히 특정 체약국의 조치가 NAFTA협정의 의무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NAFTA협정에 의하여 인정된 통상이익이 무효 또는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의 다른 통상협정 특히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NAFTA분쟁해결절차가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GATT분쟁해결절차와 병행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NAFTA협정의 해석 및 적용의 문제가 동시에 GATT의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된 분쟁사안의 경우에, 분쟁당사국은 NAFTA협정의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할 것인지 아니면 GATT의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사람, 동·식물의 생명이나

13) NAFTA협정 제1718조.

14) NAFTA협정 제2001조 내지 제2022조 참조.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체약국이 취한 조치와 관련된 분쟁으로서 NAFTA협정의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된 경우에는, GATT분쟁해결 절차보다 NAFTA협정의 분쟁해결절차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분쟁당사국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우선 협의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협의절차는 분쟁당사국의 서면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며, 분쟁당사국이 아닌 제3체약국도 협의대상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제3체약국도 서면청구를 통하여 이러한 협의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상하기 쉬운 농산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협의는 청구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15일내에 개시되어야 하고 협의에 참가한 체약국들은 정보제공 및 비밀정보보호 등에 관한 협력을 해야 한다. 즉, 체약국들 특히 분쟁당사국들은 NAFTA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관한 완전한 조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정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유지의 일반적 의무를 부담한다.

협의에 참가한 체약국들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서면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는 소집되고 즉시 분쟁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당사국들이 상호만족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고문을 위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실무위원회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주선·조정·중개 또는 기타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분쟁당사국들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소집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를 청구한 체약국은 서면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의 구성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송부된 후 즉시 위원회는 패널을 구성하도록 하고, 분쟁사안에 대해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3의 체약국도 서면 통지에 의하여 패널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체약국들은 패널위원으로 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30명의 패널위원 후보에 관한 명부를 만들어 유지해야 한다. 패널위원후보명부에 등재될 위원후보는 체약국의 만장일치에 의해 3년의 임기로 선임되면 재임될 수 있다. 패널위원후보는 법률, 국제무역, 본 협정에 규정된 기타사안, 또는 국제

무역협정에 따른 분쟁의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하며, 객관성, 신뢰성과 공정한 판단력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또한, 패널위원후보는 어떤 체약국과도 독립적이며, 특수한 관계를 맺지 않으며, 특정 체약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5명의 위원으로 패널이 구성되는 것으로 하고, 분쟁당사국들은 패널의 구성 신청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15일내에 패널의 위원장 선임에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해 기간내에 위원장선임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 일방 분쟁당사국이 5일내에 자국민이 아닌 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된 날로부터 15일내에 각분쟁당사국은 타 체약국의 국민으로부터 2명의 위원을 선임한다.

패널은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분쟁당사국들의 동의하에 사실문제에 관한 과학심의위원회의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패널은 이러한 조언과 보고 그리고 분쟁당사국들의 주장내용과 제출서류를 토대로 하여, 최종 패널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최초보고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국들에 제출해야 한다. 패널의 최초보고서는 분쟁사안에 대한 사실판단뿐만 아니라 분쟁대상이 된 조치가 NAFTA협정의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패널의 최초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내에, 분쟁당사국은 당해 최초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패널은 최초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국들에 제출해야 한다. 패널의 이러한 최종보고서는 위원회에 전달된 날로부터 15일내에 공표되어야 한다.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교부받은 후, 분쟁당사국들은 분쟁의 해결에 합의해야 하고, 그러한 분쟁해결은 통상적으로 패널의 결정 및 권고에 합치하는 내용의 분쟁해결이어야 하며, 합의된 분쟁해결내용을 사무국의 자국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NAFTA협정을 위반한 분쟁당사국이 상호만족 할만한 분쟁해결방안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해결을 신청한 분쟁당사국은 분쟁의 해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NAFTA협정상의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편익을 당해 위반국에 적용하는 것을 정지시킬 수 있

다. 패널보고서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편의정지는 원칙적으로 NAFTA협정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패널이 판단한 특정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부문과 동일한 부문에서의 편익을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

VII. GATT체제와의 관계

NAFTA협정의 내용 이상으로 우리나라에 중요한 이슈는 NAFTA협정이 기존의 多者貿易體制 GATT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을 것인가 특히 NAFTA협정이 GATT협정상의 의무와 조화될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일 것이다. GATT는 본래 地域的 貿易 協定의 체결 및 運營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일정한 범위내의 지역적 무역자유화를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GATT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customs unions)에 대하여 GATT의 대원칙인 最惠國待遇(MFN)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를 원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 무역 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의 실질적으로 모든(substantially all) 부분이 自由化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고, 또한 동시에 그러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협정이 제3국의 교역에 대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요건이 있다.¹⁵⁾ 그러나 이제까지 각종의 특혜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왔어도 GATT에 위반된다고 문제시된 경우는 없었다.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이 허용되는 이유는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전세계의 교역과 복지가 향상된다고 하는 점이라고 보는 차원에서, GATT의 기본적인 最惠國待遇(MFN) 원칙을 배제한 결과 무역 창조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무역 왜곡적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지만,¹⁶⁾ 실제로 엄격히 해석되어 오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NAFTA협정도 전반적으로

15) GATT 제24조.

16) John H.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 (Cambridge, the MIT Press, 1990), p.141.

는 GATT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말할 수 있고, 다만 NAFTA협정이 산업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과 분쟁해결절차를 각각 두고 있다고 하는 점이 GATT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장래에 GATT회원국 가운데 어느 회원국(韓國 또는 日本을 포함)이 NAFTA협정에 의하여 GATT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NAFTA 협정과 유럽연합 등의 지역적 무역자유화 협정이 GATT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검토를 하는 다자감시체제를 활용하는 것일 것이다. 이번 UR 협정에서 잘 정비된 通商政策監視體制(Trade Policy Review Mechanism:TPRM)에 의하여 NAFTA협정 등의 무역자유화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로 인하여 제3국의 통상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감시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VII. NAFTA협정의 교훈 및 향후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NAFTA협정의 내용은 미국통상정책의 기본골격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법 정비에 참고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NAFTA 협정의 내용과 UR협정의 내용을 비교해보아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수준 등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 바, 양자의 협정으로부터 미국통상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미국 通商政策의 방향과 내용 및立法技術은 앞으로 전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의 추진과 후속협정의 체결에 있어서 예상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NAFTA협정이 그러한 전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UR협정 또는 기타의 무역규범과는 내용과 효과면에서 상이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UR협정은 다자무역체제로서 농산물 시장까지 개방해야 한다는 어려움은 내포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이 완화됨으로써

국제적 교역이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상당한 수출증대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NAFTA협정은 특정 경제블록 내에서의 제한적 또는 선별적인 교역자유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3국으로서의 韓國 등은 멕시코 등의 체약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생산을 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으로서는 유럽연합 또는 일본 등과 연대하여 적절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직면하여 NAFTA협정으로 인한 역외국가의 차별이 GATT의 최혜국 대우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NAFTA협정의 체결로부터 지역경제블록화의 세계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로서는 UR협정과 같은 다자무역체제의 강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태경제 협력의 추진에 있어서 NAFTA협정이 좋은 참고자료가 됨은 물론이다. 또한, NAFTA협정과 UR협정의 체결이후에 미국 등 선진국이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勞動과 環境 문제가 중요한 국제 통상이슈로 등장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사이에는 노동조건 및 환경보호를 감시하고 각 체약국의 관련 법제도의 집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3국간조사위원회 (trinational panel)를 구성하여 특히 멕시코에서의 노동과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된 국가간 분쟁을 해결해 나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NAFTA협정은 20세기말을 장식하는 國際通商秩序의 變化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로서는 그에 따른 새로운 차원의 입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NAFTA협정의 주된 내용은 멕시코의 교역장벽을 완화하고 멕시코의 投資, 知的所有權, 政府調達, 金融 및 기타의 서비스, 勞動, 環境 등에 관한 國內法制度를 美國의 입장에서 公正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의 법제도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과거의 전통적인 무역자유화협정들이 주로 관세인하 등 국경통과에 제한된 법제도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달리 NAFTA협정을 비롯한 최근의 무역자유화협정들은 체약국의 국내법제도의 내용까지 언급하고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GATT입안자들은 관세, 쿼터, 수출보조금, 국영무역, 세관절차 등의

소위 國境上 貿易障壁(border barriers)의 완화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¹⁷⁾ 20세기말의 NAFTA협정 입안자들은 체약국의 국내법의 내용과 집행에까지 검토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또는 새로운 입법적 대응은 각국 국내법의 비교·검토를 전제로 하고, 이제는 상품생산의 경쟁성뿐만 아니라 각국 국내법의 효율성까지도 경쟁의 대상이 된다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7) John H. Jackson, *Op. cit.*, p.141.